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6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안상훈 · 이성권 · 임이자
백종헌 · 박덕흠 · 고동진
인요한 · 김미애 · 김소희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
9까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2.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부의 지원) 정부는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4(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6(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퇴직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 ③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의9(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무) 퇴직연금급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1호 중 “회원”을 “회원 또는 사용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사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6. -----제5호-----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u>

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정부의 지원) 정부는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6(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신 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의7(퇴직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
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
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신 설>

협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신 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u>회원의 부담금</u> 2. ~ 4. (생략)	<u>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u>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u> <u>제6조의9(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무) 퇴직연금급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 제7조(재원) ----- ----- ----- ----- ----- ----- -----. 1. <u>회원 또는 사용자</u>----- 2. ~ 4. (현행과 같음)
--	--